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보험업법」 개정 등 선임계리사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임계리사의 임면 절차를 구체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7. ~ 6. 21.) 총리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본문의 “같다.”를 “같으며,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2호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제45조 제1항의 “법 제181조제3항”을 “법 제181조의2제5항”으로 하고, “거쳐”를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로 한다.

제45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 ----- ----- ----- <u>같으며,</u> <u>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u> <u>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u> <u>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신 설>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 에 관한 사항
1.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u>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u> <u>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	3. ----- ----- <u>적립에 관한 사항</u>
3.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u>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u>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 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u>거쳐</u>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 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u>법 제181조의2제5항</u> ----- ----- ----- ----- <u>거쳐야 하며 해임할</u> <u>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u> <u>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u> ----- -----

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삭제>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 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4